

# 2018년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동아ST(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1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내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목차

|                                |    |
|--------------------------------|----|
| I. 지배구조 일반 .....               | 4  |
|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 4  |
| 2. 조직도 .....                   | 5  |
|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 5  |
| 4. 지배구조 특징 .....               | 5  |
| 5. 지배구조 현황 .....               | 6  |
| II. 주주 .....                   | 7  |
| 1. 주주의 권리 .....                | 7  |
|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 9  |
| III. 이사회 .....                 | 11 |
| 1. 이사회 기능 .....                | 11 |
|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        | 13 |
| 3. 사외이사 .....                  | 14 |
| 4. 이사회 운영 .....                | 16 |
| 5. 이사회 내 위원회 .....             | 18 |
| 6. 평가 및 보상 .....               | 21 |
| IV. 감사기구 .....                 | 21 |
| 1. 내부 감사기구 .....               | 21 |
| 2. 외부감사인 .....                 | 25 |

|                          |    |
|--------------------------|----|
| V.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 26 |
| 1. 계열회사의 현황 .....        | 26 |
| 2. 윤리경영 관련 .....         | 26 |
| 3. 소비자중심경영 .....         | 27 |
| <br>                     |    |
| [첨부] 관련 규정 .....         | 28 |
| (1) 정관 .....             | 28 |
| (2) 이사회 규정 .....         | 43 |

## I. 지배구조 일반

###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내부 의사결정주체의 독립성,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http://www.donga-st.com>) 및 DART(<http://dart.fss.or.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정관, 이사회 규정, 주주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당사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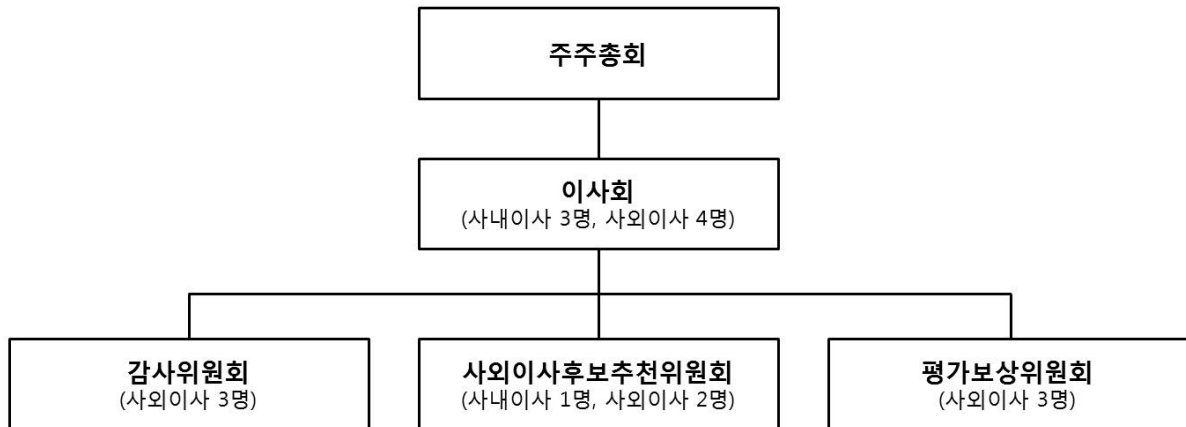
당사는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법률, 제약R&D, 보건의료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기업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제도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최적화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조직도



##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 강정석 회장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3.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강정석      | 최대주주    | 보통주    | 28,210    | 0.38  |    |
| 강수형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2,200     | 0.03  |    |
| 민장성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000     | 0.01  |    |
| 이동훈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006     | 0.01  |    |
| 이주섭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962       | 0.01  |    |
| 신유석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144     | 0.01  |    |
| 홍승완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370       | 0.00  |    |
| 김민영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98       | 0.00  |    |
| 동아쏘시오홀딩스 | 계열회사    | 보통주    | 1,886,502 | 22.34 |    |
| 상주학원     | 재단      | 보통주    | 29,754    | 0.35  |    |
| 수석문화재단   | 재단      | 보통주    | 45,338    | 0.54  |    |
| 합계       |         |        | 1,997,084 | 23.65 |    |

## 4. 지배구조 특징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전체 구성원 대비 약 57%), 2018년 이

후부터 이사회 의장직은 대표이사직과 분리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병창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전문성과 능률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후보 추천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회계감사,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개별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주주가치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 (3)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

당사는 경영 전반(김근수 이사), 법률(우병창 이사), 제약R&D(류재상 이사), 보건의료행정(최희주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진을 감독·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다양한 사외이사 구성은 일반적인 경영 및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업적 특성에 맞는 제약R&D 및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 5. 지배구조 현황

| 기관  | 구성<br>(사외이사수/<br>구성원수) | 의장(대표자)<br>(사내외이사 여부) | 주요심의내용  |
|-----|------------------------|-----------------------|---|
| 이사회 | 4/7                    | 우병창<br>(사외이사)         | · 주주총회의 소집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br>· 사업계획, 결산, 신규투자 등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             |     |                |   |
|-------------|-----|----------------|---|
|             |     |                | · 대표이사의 선임,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br>·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배당 결정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 감사위원회       | 3/3 | 김근수<br>(사외이사)  | ·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br>·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br>·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br>·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대한 승인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3 | 선임예정<br>(사외이사)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
| 평가보상위원회     | 3/3 | 선임예정<br>(사외이사) | · 임원 성과평가기준 및 보상기준 수립<br>·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목표 승인<br>·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

## II. 주주

###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①)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1) 주주총회 개최 관련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총회일의 3주전까지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제5기 주주총회부터 주주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슈퍼 주총데이가 아닌 3월 넷째주 화요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 구분                       | 제5기 주주총회                              | 제4기 주주총회                   | 제3기 주주총회                   |
|--------------------------|---------------------------------------|----------------------------|----------------------------|
| 소집결의일                    | 2018.02.28(수)                         | 2017.03.02(목)              | 2016.02.25(목)              |
| 공고일                      | 2018.03.12(월)                         | 2017.03.09(목)              | 2016.03.03(목)              |
| 개최일시                     | 2018.03.27(화)<br>오전 8시 30분            | 2017.03.24(금)<br>오전 8시 30분 | 2016.03.18(금)<br>오전 8시 30분 |
| 주총분산<br>자율준수프로그램<br>참여여부 | ○                                     | N/A                        |                            |
| 개최장소                     |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길 18 동아ST(주) 신관 7층 대강당 |                            |                            |

(2)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권행사 관련 등

제5기 정기주주총회는 상정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출석한 주주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155명이며, 출석주식수는 4,618,860주입니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54.74%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제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참고서류를 공시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주주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종료 후 결과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8년 3월 27일에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

(단위 : 주)

| 안건       | 결의 구분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주식수              | 반대주식수     | 기권주식수   | 출석수 대비 찬성율 |        |
|----------|-------|----------------|--------------------|-----------|---------|------------|--------|
| 제1호 의안   | 보통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4,590,599          | 28,232    | 29      | 99.39%     |        |
| 제2-1호 의안 | 보통    | 정관 변경의 건       | 조문 정비의 건           | 4,618,506 | 325     | 29         | 99.99% |
| 제2-2호 의안 |       |                | 이사수 상한 축소의 건       | 4,618,561 | 274     | 25         | 99.99% |
| 제2-3호 의안 |       |                | 감사위원회 도입의 건        | 4,618,486 | 345     | 29         | 99.99% |
| 제2-4호 의안 |       |                | 대표이사외 이사회 의장 분리의 건 | 4,618,490 | 345     | 25         | 99.99% |
| 제2-5호 의안 |       |                | 이사회 소집권자 변경의 건     | 4,618,486 | 345     | 29         | 99.99% |
| 제2-6호 의안 |       |                | 이사회 내 위원회 확대의 건    | 4,618,486 | 349     | 25         | 99.99% |
| 제2-7호 의안 |       |                | 분기배당 도입의 건         | 4,618,580 | 255     | 25         | 99.99% |
| 제2-8호 의안 |       |                | 부칙 신설의 건           | 4,618,556 | 275     | 29         | 99.99% |
| 제3-1호 의안 | 보통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엄대식                | 3,753,335 | 865,500 | 25         | 81.26% |
| 제3-2호 의안 |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류재상                | 4,618,457 | 378     | 25         | 99.99% |
| 제3-3호 의안 |       |                | 최희주                | 4,618,386 | 449     | 25         | 99.99% |
| 제4-1호 의안 | 특별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우병창                | 1,924,223 | 281,542 | 25         | 87.24% |
| 제4-2호 의안 |       |                | 김근수                | 1,952,200 | 253,565 | 25         | 88.50% |
| 제4-3호 의안 |       |                | 최희주                | 2,205,351 | 414     | 25         | 99.98% |
| 제5호 의안   | 보통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3,752,672          | 866,163   | 25      | 81.25%     |        |
| 제6호 의안   | 보통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610,927          | 7,758     | 175     | 99.83%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3% 초과 의결권 제한



### (3) 배당 관련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금전과 주식 등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6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당기에도 정부의 규제강화 및 제약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힘든 경영상황 속에서도 현금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별도 기준 20%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특히 제5기에는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내부 유보자금을 활용하여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내부유보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의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배당 내역]

| 구분             | 주식의 종류 | 제5기    | 제5기    | 제3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5,396 | 10,628 | 48,562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5,235 | 12,917 | 47,952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639   | 1,268  | 6,192  |
| (별도)주당순이익(원)   |        | -620   | 1,541  | 6,114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4,219  | 4,220  | 8,031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39.70  | 16.54  |
| (별도)현금배당성향(%)  |        | -      | 32.67  | 16.75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0.52   | 0.56   | 0.72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500    | 500    | 1,000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연결 및 별도 주당순이익은 보통주의 기본주당순이익임.

###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②)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1) 주식발행 현황

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이 있으며, 우선주식의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우선주 발행 시 상환권, 전환권, 상환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이며, 그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8,443,868주입니다.

[주식발행 현황]

(기준일 : 2017.12.31, 단위 : 주)

| 구분                    | 주식의 종류     |           |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00 | 3,000,000 | 30,000,000 | -      |
|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8,443,868  | 700,348   | 9,144,216  | -      |
|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700,348   | 700,348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700,348   | 700,348    | 전환권 행사 |
| IV. 발행주식의 총수 (II-III) | 8,443,868  | -         | 8,443,868  | -      |
| V. 자기주식수              | 5,478      | -         | 5,478      | -      |
| VI. 유통주식수 (IV-V)      | 8,438,390  | -         | 8,438,390  | -      |

(2) IR 개최 현황

당사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가치 극대화, 투자자와의 신뢰형성을 위해 다양한 IR 활동을 정기적, 수시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 영업잠정실적을 공시한 이후 실적발표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잠정실적 공시 후 분기 IR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실적발표회를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평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적발표 전 2주간은 IR활동 중단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NDR(Non Deal Roadshow)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개최하는 국내외 Conference나 Corporate Day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IR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투자자를 위해 매년 영문으로 Annual Report를 제작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사는 실적발표 4회, 국내 NDR 3회, 해외 Conference 참가 2회, 국내외 기관 본사방문

IR 117회 등 총 126회의 IR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3) 기업정보 공개 현황

당사에 관련된 정보는 당사의 국/영문 홈페이지 (국문 <http://www.donga-st.com>, 영문 <http://en.donga-st.com>)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를 위해 매년 영문 Annual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당사 국/영문 홈페이지에 Annual Report와 정기 IR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 내 경영정보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섹션에는 정관, 이사회 규정, 주식분포 상황, 이사회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및 당사의 재무현황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www.donga-st.com/Pass.da?viewPath=/b05/association>

### (4)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장치 현황 등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결의요건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Ⅲ. 이사회

###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③)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당사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뿐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정관 제5장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승인 사항   |            |             |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의 소집</li> <li>· 영업보고서의 승인</li> <li>· 재무제표의 승인</li> <li>· 정관의 변경</li> <li>· 자본의 감소</li> <li>·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li> <li>·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li> </ul>               |            |             |
| 경영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li> <li>· 신규사업의 추진</li> <li>·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li> <li>· 공동대표의 결정</li> <li>·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li> <li>·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li> </ul> |            |             |
| 재무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주의 발행</li> <li>·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li> <li>·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등</li> <li>·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li> </ul>   |            |             |
|               | 구분  | 기준         |             |
|               | 시설투자  | 자기자본       | 100분의 10 이상 |
|               |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            | 100분의 5 이상  |
|               | 단기자금의 차입  |            | 100분의 10 이상 |
|               |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            | 100분의 5 이상  |
|               | 선급금 지급, 금전 및 증권의 대여, 가지급 결정   |            | 100분의 5 이상  |
|               |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 매출액        | 100분의 5 이상  |
|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 자산총액  | 100분의 5 이상 |             |
|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li> <li>·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li> <li>· 타회사의 임원 겸임</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소송의 제기</li> <li>·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신설 등</li> </ul>  |            |             |

(2) 이사회 권한 위임 관련

이사회는 정관 제14조에 의거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이사회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핵심원칙④)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1) 이사회 구성 관련

당사 이사회는 정관상 3명 이상 7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최소 이사회 총원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7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당사 규모를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현황]

| 성명  | 선임일        | 임기 | 직위   | 담당업무/경력   |
|-----|------------|----|------|---|
| 엄대식 | 2018.03.27 | 3년 | 회장   | 대표이사  |
| 이동훈 | 2017.03.24 | 3년 | 부사장  | 글로벌사업본부장  |
| 윤태영 | 2017.03.24 | 3년 | 전무이사 | 연구본부장   |
| 우병창 | 2017.03.24 | 3년 | 사외이사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br>(現)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 김근수 | 2016.03.18 | 3년 | 사외이사 |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br>(現) 경희대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부교수              |
| 류재상 | 2018.03.27 | 3년 | 사외이사 | Memorial Sloan-Kettering 암센터 연구원<br>(現) 이화여대 약학대학 학과장 |
| 최희주 | 2018.03.27 | 3년 | 사외이사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실장<br>(現) 법무법인 올촌 고문                      |

(2) 이사 자격요건 및 선임 관련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사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집중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핵심원칙⑤)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1) 사외이사의 선임 및 검직 현황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선임됩니다.

참고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타법인 이사·집행임원·감사 검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구분     |       | 우병창                                     | 김근수                                | 류재상                                  | 최희주                          |
|--------|-------|---|------------------------------------|--------------------------------------|------------------------------|
| 적극적 요건 | 전문성   | - 법학과 교수로서 법학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보유    | - 경영학 교수로서 회계, 경영전반에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음 | - 약학과 교수로서 제약R&D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보유 | - 보건의료행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보유 |
|        | 직무공정성 |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주주의 이익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함 |                                    |                                      |                              |
|        | 윤리성   |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
|        | 충실성   | 재직기간 이사회                                | 재직기간 이사회 출                         | 이사회 활동에                              |                              |

|        |                                     |           |          |                  |
|--------|-------------------------------------|-----------|----------|------------------|
|        |                                     | 출석률 100%, | 석률 95.7% |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가능 |
| 소극적 요건 |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위반사항 없음 |           |          |                  |

[타법인 이사·집행임원·감사 겸직 현황]

| 성명  | 겸직 현황      |
|-----|------------|
| 우병창 | (주)금양 사외이사 |
| 김근수 | 해당사항 없음    |
| 류재상 | "          |
| 최희주 | "          |

(2)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

당사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반(김근수 이사), 법률(우병창 이사), 제약R&D(류재상 이사), 보건의료행정(최희주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사외이사 구성은 일반적인 경영 및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업적 특성에 맞는 제약R&D 및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심도 있는 이사회 의안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당사는 전담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의 원활한 이사회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전에 이사들이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3일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 제공,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 실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 개최 등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4.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직과 분리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우병창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상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2월, 4월, 7월,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개최됩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 이외의 이사는 필요시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사에 통지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들의 개별 참석 및 찬반여부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16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4회, 임시이사회 12회)가 개최되었으며, 2018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7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2회, 임시이사회 5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이사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br>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우병창<br>(출석률:<br>100%) | 김근수<br>(출석률:<br>100%) |
|    |            |   |          | 찬반여부                  |                       |
| 1  | 2017.02.09 | 제4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인더스파크 자금보증약정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  | 2017.02.23 | 제4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  | 2017.03.02 |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    |            | 2016년 연간 손익실적 및 2017년 연간 및 1분기 손익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    |            |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
|----|------------|---------------------------------|----|----|----|
| 4  | 2017.03.22 | 차입금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5  | 2017.03.23 | 여신거래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6  | 2017.03.24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7  | 2017.04.21 | 2017년 1분기 손익실적 및 2분기 손익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    |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8  | 2017.04.25 |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9  | 2017.05.29 | 차입금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0 | 2017.07.21 | 2017년 2분기 손익실적 및 3분기 손익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 11 | 2017.09.22 | 경영투명성 제고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2 | 2017.10.30 | 2017년 3분기 손익실적 및 4분기 손익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3 | 2017.11.01 | 차입금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4 | 2017.11.23 | 여신 한도금액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5 | 2017.11.27 |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6 | 2017.12.11 | 독립 준법자문인 제도 도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2018년 이사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br>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          | 우병창<br>(출석률:<br>100%) | 김근수<br>(출석률:<br>100%) | 류재상<br>(출석률:<br>100%) | 최희주<br>(출석률:<br>100%) |
|    |            |                                 |          | 찬반여부                  |                       |                       |                       |
| 1  | 2018.01.15 |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여신거래 재약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2  | 2018.02.07 | 제5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3  | 2018.02.28 |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                       |
|    |            | 2018년 경영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                       |
|    |            | 제5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4  | 2018.03.08 |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5  | 2018.03.27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18.04.27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18년 1분기 손익실적 및 2분기 손익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7 | 2018.05.02 | 차입금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류재상, 최희주 사외이사는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2018.03.27)

## 5.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⑦)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별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2)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내역 등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과 교수인 김근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동 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총 3명의 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내이사 1명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 또한 전원 사외이사로 위원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보상제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역할 및 구성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관련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구분   | 직위 | 선임일        | 임기만료일    |
|-----|------|----|------------|----------|
| 엄대식 | 사내이사 | 위원 | 2018.04.27 | 2021년 3월 |
| 우병창 | 사외이사 | 위원 | 2017.09.22 | 2020년 3월 |
| 류재상 | 사외이사 | 위원 | 2018.04.27 | 2021년 3월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장은 공석으로, 차기 위원회에서 선임예정입니다.

② 활동내역

당사는 2017년 9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이 예상될 때마다 개최되며, 2017년에는 총 0회, 2018년에는 총 1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br>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우병창<br>(출석률:<br>100%) | 김근수<br>(출석률:<br>100%) |
|    |            |                          |          | 찬반여부                  |                       |
| 1  | 2018.02.2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나. 평가보상위원회

① 역할 및 구성

당사의 평가보상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평가보상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구분   | 직위 | 선임일        | 임기만료일    |
|-----|------|----|------------|----------|
| 김근수 | 사외이사 | 위원 | 2017.03.24 | 2019년 3월 |
| 류재상 | 사외이사 | 위원 | 2018.04.27 | 2021년 3월 |
| 최희주 | 사외이사 | 위원 | 2018.04.27 | 2021년 3월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장은 공석으로, 차기 위원회에서 선임예정입니다.

## ② 활동내역

평가보상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초 개최하여 직전 사업연도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안을 결정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임원 성과목표와 보상계획을 승인합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2017년에 1회, 2018년에 1회 개최되었습니다.

### [2017년 평가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br>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우병창<br>(출석률:<br>100%) | 김근수<br>(출석률:<br>100%) |
|    |            |                             |          | 찬반여부                  |                       |
| 1  | 2017.03.24 | 2016년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2017년 임원 성과평가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18년 평가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br>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우병창<br>(출석률:<br>100%) | 김근수<br>(출석률:<br>100%) |
|    |            |                             |          | 찬반여부                  |                       |
| 1  | 2018.03.08 | 2017년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2018년 임원 성과평가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본 보고서 다음 항목인 'IV. 감사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평가 및 보상

(핵심원칙⑧)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 신규선임 및 재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의 활동 및 보수 현황]

(2017.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인원수 | 평균출석률 | 연간 보수총액 | 1인당<br>연간 평균보수액 |
|------|-----|-------|---------|-----------------|
| 사외이사 | 2   | 100%  | 72      | 36              |

## IV. 감사기구

### 1. 내부 감사기구

(핵심원칙⑨)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감사제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하여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 (1) 감사위원회 관련

##### ① 역할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감사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거나 회사 내 감사조직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의사항   |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li> <li>·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li> </ul>  |
|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중지청구 여부</li> <li>· 영업보고의 요구</li> <li>·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li> </ul>  |
| 감사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li> <li>·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li> <li>·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사항</li> <li>·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에 관한 사항</li> <li>·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li> <li>·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대한 승인</li> <li>·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li> <li>·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li> </ul> |

## ② 구성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정관 제39조의3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김근수 위원이 맡고 있으며,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구분   | 직위  | 선임일        | 임기만료일    |
|-----|------|-----|------------|----------|
| 김근수 | 사외이사 | 위원장 | 2018.03.27 | 2019년 3월 |
| 우병창 | 사외이사 | 위원  | 2018.03.27 | 2020년 3월 |
| 최희주 | 사외이사 | 위원  | 2018.03.27 | 2021년 3월 |

### ③ 활동내역

당사는 2018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제도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과 2018년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는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였습니다. 또한 제5기 사업연도(2017.01.01~2017.12.31)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 감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감사의 이사회 참석현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br>여부 | 감사의 성명            |
|----|------------|---|----------|-------------------|
|    |            |   |          | 박경준<br>(출석률:100%) |
| 1  | 2017.02.09 | 제4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            | 인더스파크 자금보충약정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2  | 2017.02.23 | 제4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3  | 2017.03.02 |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    |            | 2016년 연간 손익실적 및 2017년 연간 및 1분기 손익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    |            |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                |
| 4  | 2017.03.22 | 차입금 연장의 건                                 | 가결       | 출석                |
| 5  | 2017.03.23 | 여신거래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출석                |
| 6  | 2017.03.24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                |
|    |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                |
| 7  | 2017.04.21 | 2017년 1분기 손익실적 및 2분기 손익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    |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                |
| 8  | 2017.04.25 |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출석                |
| 9  | 2017.05.29 | 차입금 연장의 건                                 | 가결       | 출석                |
| 10 | 2017.07.21 | 2017년 2분기 손익실적 및 3분기 손익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 11 | 2017.09.22 | 경영투명성 제고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의 건                         | 가결       | 출석                |
| 12 | 2017.10.30 | 2017년 3분기 손익실적 및 4분기 손익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출석                |
| 13 | 2017.11.01 | 차입금 연장의 건                                 | 가결       | 출석                |
| 14 | 2017.11.23 | 여신 한도금액 변경의 건                             | 가결       | 출석                |
| 15 | 2017.11.27 |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16 | 2017.12.11 | 독립 준법자문인 제도 도입의 건                         | 가결       | 출석                |

[2018년 감사의 이사회 참석현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br>여부 | 감사의 성명            |
|----|------------|--------------------|----------|-------------------|
|    |            |                    |          | 박경준<br>(출석률:100%) |
| 1  | 2018.01.15 |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출석                |
|    |            | 여신거래 재약정의 건        | 가결       | 출석                |
| 2  | 2018.02.07 | 제5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3  | 2018.02.28 |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    |            | 2018년 경영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출석                |
|    |            | 제5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                |
|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의 건 | 가결       | 출석                |
| 4  | 2018.03.08 |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출석                |

[2018년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br>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 김근수<br>(출석률:<br>100%) | 우병창<br>(출석률:<br>100%) | 최희주<br>(출석률:<br>100%) |
|    |            |                               |          | 찬반여부                  |                       |                       |
| 1  | 2018.05.14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18년 1분기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18년 상반기 내부감사계획 승인 및 경과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감사지원조직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선임일        | 주요경력  | 비고    |
|-----|------------|---|-------|
| 유주현 | 2017.04.21 | - 학력 : 서울대 제약학과 졸업<br>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br>- 경력 : 2007 Sanofi-Aventis Korea<br>2008 서울대병원 약제부<br>2013 변호사 시험 합격<br>2013 리&목 특허법인<br>2014 CJ헬스케어<br>2017 동아ST CP관리실 변호사 | 임기 3년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1명의 임원과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및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각 부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회계 감사를 위하여 재경조직에서 매 분기 회계결산 결과, 회계검토 및 감사 시 주요 이슈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⑩)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선임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성회계법인을 2016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4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8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한올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2018년 3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 사업연도부터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과 감사용역계약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 제5기  | 삼성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분기검토, 반기검토, 기말감사 | 180,000 | 별도 : 1,695<br>연결 : 921 |
| 제4기  | 삼성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분기검토, 반기검토, 기말감사 | 178,000 | 별도 : 1,363<br>연결 : 734 |
| 제5기  | 삼성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분기검토, 반기검토, 기말감사 | 175,000 | 별도 : 1,343<br>연결 : 723 |

※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계약 체결내역은 없습니다.

## V.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1.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아쏘시오그룹에 속한 회사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아쏘시오그룹에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17개의 계열회사가 있으며, 상장 3개사, 비상장 14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회사 세부현황]

(2017.12.31 기준)

| 상장여부 | 상호        | 구분       | 주요업종         |
|------|-----------|----------|--------------|
| 상장사  | 동아쏘시오홀딩스  | 지주회사     | 지주사업         |
|      | 동아에스티     | 자회사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      | 에스티팜      | 자회사      | 원료의약품        |
| 비상장사 | 동아제약      | 자회사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      | 디엠바이오     | 자회사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      | 수석        | 자회사      | 포장용기 제조 및 판매 |
|      | 수석농산      | 자회사      | 농산물 생산 및 판매  |
|      | 용마로지스     | 자회사      | 물류업          |
|      | DA인포메이션   | 자회사      | 소프트웨어 개발     |
|      | 동아오츠카     | 자회사      |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 |
|      | 동천수       | 자회사      | 생수 제조 및 판매   |
|      | 철근종합건설    | 자회사      | 건설업          |
|      | 동아메디케어    | 자회사      | 타회사 지분인수     |
|      | 인더스파크     | 손자회사     | 산업단지         |
|      | 참메드       | 손자회사     |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
|      | 비티랩스      | 손자회사     | 신약 연구개발      |
|      | 엔에스인베스트먼트 | 기타국내계열회사 | 창업에 대한 투자    |

### 2. 윤리경영 관련

당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Compliance Program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CP평가에서 업종 중 최고등급인 A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는 Compliance Program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운영, 대표이사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CP 강화 선포식, 자율준수편람 제정, 배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 370001 도입을 선포하고, 인증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 운영현황,

CP Standard, 자율준수편람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www.donga-st.com/Pass.da?viewPath=/b01/CP\\_Message](http://www.donga-st.com/Pass.da?viewPath=/b01/CP_Message)

또한 당사는 내부고발 신고접수 및 조사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는 독립준법자문인 제도를 2017년 12월 도입하여, 내부고발을 통한 조사 및 조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 3. 소비자중심경영

당사는 임직원들의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준비해왔고, 2017년 6월 처방의약품 전문 제약기업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월 '고객중심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CCM사무국인 고객만족팀을 신설하여 CCM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임직원 CCM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CCM 홈페이지 개설, VOC(고객의 소리) 응대 시스템 구축, 사내 웹진에 매월 CCM Report 게재 등 소비자 권익 확대와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 및 불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불만처리위원회' 운영 및 조제 약국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찾아가는 CS제도'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고객중심경영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CCM Best Practice Awards'를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고객의 제안을 듣고 제품, 서비스, 제도 등 각종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개선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VOC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 [첨부] 관련 규정

(1) 정관

# 동아에스티주식회사 정관

2013. 3.04 제정

2014. 3.21 개정

2018. 3.27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동아에스티주식회사(영문 Dong-A ST Co.,Ltd.)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의약품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
2. 의약품소분업
3. 연구, 개발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 등의 제공업 및 관련 용역 수탁업
4. 한약재 수출입 및 판매업
5.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임대, 수리 및 판매업
6. 식료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7. 화장품, 세제, 세정제, 비누, 도료,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8. 효소의 제조 및 매매업
9.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0. 수입품의 판매 및 위탁업
11.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12. 전산용역 및 임대업
13. 조림, 육림 및 약초재배업(양속제외)
14. 창고업 및 자동차 운수사업
15. 기계·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 및 매매업
16. 의약품가공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임대업
17. 교육 서어비스업
18. 금형 및 기타장치 제조 및 매매업
19. Engineering용역업
20. 주류 수출입 중개업
21. 통신판매업
22. 자가측정 대행업
23.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24. 단미사료제조업
25. 주택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26. 조립식 주택사업
27.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
28. 아파트형 공장건설, 분양 및 임대업
29. 택지,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
30. 상가, 업무용 시설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31.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
32.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 사업
33. 전각호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제3조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공장과 지점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onga-st.com>)에 게재한다. (2014년 3월 21일 개정)

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 (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7조의 2에 따른 우선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또는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7조의 2 제7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제7조의4 (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7조의 2에 따른 우선주식을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환청구 기간은 제7조의 2 제7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5 (상환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7조의 3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조의 4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해당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리사주조합원은 제외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우리사주조합과 이 회사간 체결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업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1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9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삭제) <2018.03.27>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2018.03.27>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약간명의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 책임기간으로 한다. 의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통할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일상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34조의3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35조 (삭제) <2018.03.27>

제36조 (삭제) <2018.03.27>

제37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 소집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18.03.27>

④ (삭제) <2018.03.27>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39조의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자자문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평가보상위원회 <본호 신설 2018.03.27>
4. 감사위원회 <본호 신설 2018.03.27>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본호 신설 2018.03.27>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3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선임한다. <본조 신설 2018.03.27>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상담역 또는 고문을 약간명 위촉할 수 있다.

## 제6장 계 산

제42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03.27>

④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4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③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18.03.27>

(2) 이사회 규정

## 이사회 규정

2013. 03. 04. 제정

2018. 04. 27.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에스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개정 2018.04.27>

② 의장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개정 2018.04.27>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18.04.27>

④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4.27>

제6조 삭제 <2018.04.27>

## 제 3 장 회 의

제7조 (이사회 종류) <개정 2018.04.27>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2월, 4월, 7월,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04.27>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18.04.27>

제8조 삭제 <2018.04.27>

제9조 삭제 <2018.04.27>

제10조 (소집권자)

① 소집권자는 정관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27>

② 삭제 <2018.04.27>

③ 의장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04.27>

제10조의2 (소집절차) <신설 2018.04.27>

-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8.04.27>

제12조 (결의의 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8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8.04.27>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
  - 2.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3.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사전승인 <신설 2018.04.27>
- ③ 이사는 이사회 결의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04.27>
-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27>
- ⑤ 이사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4.27>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27>

제13조 (부의사항)

- ①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개정 2018.04.27>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 감사의 보수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의 추진 <개정 2018.04.27>
- (3) 삭제 <2018.04.27>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2) 삭제 <2018.04.27>
- (13) 삭제 <2018.04.27>
- (14) 삭제 <2018.04.27>
- (15) 삭제 <2018.04.27>
-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인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27>
-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 100분의 5이상인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개정 2018.04.27>
- (3)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8.04.27>
- (4)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개정 2018.04.27>
- (5)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 및 증권의 대여, 가지급 결정 <신설 2018.04.27>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단기자금의 차입 <개정 2018.04.27>

(1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개정 2018.04.27>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15) 결손의 처분 <개정 2018.04.27>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신설 2018.04.27>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4.27>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개정 2018.04.27>

3.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신설 2018.04.27>

4.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 보고 <신설 2018.04.27>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27>

제13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2018.04.27>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 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항)

- ① 회사가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4.27>
- ②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연초에 1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의 10% 미만인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27>
- ③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8.04.27>

제16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19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8.04.27>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8.04.27>
- 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20조 (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 <신설 2018.04.27>

-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